

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29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27
-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. 5.30
-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20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6.24)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-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-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29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가. 제안이유

- 1).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2)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1). 전년도(2023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1,423백만원에서 1,828백만원으로 405백만원 증액하였고, '보조금반환수입'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.
  - 예치금 회수 : '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202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18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81백만원),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분(4백만원)
    - \* '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' 사업비 신규편성
  - 보조금 반환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'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6백만원), '청소년 역사문화교류'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1백만원)
- 2)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750백만원에서 1,162백만원으로 412백만원 증가하여 55% 변경되었음.

3)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<b>세외수입</b>	<b>88,274</b>	<b>95,250</b>	<b>6,976</b>	<b>7.9</b>
경상적세외수입	80,041	80,041	-	-
이자수입	80,041	80,041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80,000	80,000	-	-
기타이자수입	41	41	-	-
임시적세외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보조금반환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233	3,222	989	44.3
위탁비반환수입	6,000	11,987	5,987	99.8
<b>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</b>	<b>2,722,563</b>	<b>3,128,093</b>	<b>405,530</b>	<b>14.9</b>
보전수입등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내부거래	1,300,000	1,300,000	-	-
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057,800	2,057,800	-	-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057,800	2,057,80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00,000	300,00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,000	1,000,000	-	-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,000	250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-	-
<b>재무활동</b>	<b>750,037</b>	<b>1,162,543</b>	<b>412,506</b>	<b>55.0</b>
보전지출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여유자금 예치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<b>-</b>	<b>-</b>

### 3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4억 500만원)와 보조금 반환수입(700만원)이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4억 1,200만원)에 전액반영하고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을 당초 지출계획(7억 5,000만원)보다 55.0%, 4억 1,2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11억 6,200만원)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<b>지출 합계</b>	<b>2,810</b>	<b>3,223</b>	<b>412</b>	<b>14.7</b>
시정현안 협업 기반 조성	2,057	2,057	-	-
재무활동 (행정국 대외협력과)	750	1,162	412	55.0
보전지출 (대외협력계정 국내협력계정)	750	1,162	412	55.0
여유자금예치 (국내협력계정)	750	1,162	412	55.0
행정운영경비 (행정국 대외협력과)	3	3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지출계획,  
②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○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등을 '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임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2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6조(기금의 용도)

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가. 소위원회

##### ○ 위원구성 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- 부위원장 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- 소위원회 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  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  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  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  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  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'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## 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# 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## 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## 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4. 6.24)

#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년도(2023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'예치금 회수' 금액이 당초 1,423백만원에서 1,828백만원으로 405백만원 증액하였고, '보조금반환수입'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.
- 예치금 회수 : '타지자체 재해재난구호지원' 미집행(202백만원),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(118백만원), 이자수입 증가분(81백만원),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분(4백만원)
  - 보조금 반환수입 : '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6백만원), '청소년 역사문화교류'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(1백만원)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 750백만원에서 1,162백만원으로 412백만원 증가하여 55% 변경되었음.

다.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<b>세외수입</b>	<b>88,274</b>	<b>95,250</b>	<b>6,976</b>	<b>7.9</b>
경상적세외수입	80,041	80,041	-	-
이자수입	80,041	80,041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80,000	80,000	-	-
기타이자수입	41	41	-	-
임시적세외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보조금반환수입	8,233	15,209	6,976	84.7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233	3,222	989	44.3
위탁비반환수입	6,000	11,987	5,987	99.8
<b>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</b>	<b>2,722,563</b>	<b>3,128,093</b>	<b>405,530</b>	<b>14.9</b>
보전수입등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예치금회수	1,422,563	1,828,093	405,530	28.5
내부거래	1,300,000	1,300,000	-	-
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기타회계전입금	1,300,000	1,300,000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륜 (F=E/A)
<b>합 계</b>	<b>2,810,837</b>	<b>3,223,343</b>	<b>412,506</b>	<b>14.7</b>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057,800	2,057,800	-	-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057,800	2,057,80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	300,000	300,000	-	-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,000	1,000,000	-	-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50,000	250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-	-
<b>재무활동</b>	<b>750,037</b>	<b>1,162,543</b>	<b>412,506</b>	<b>55.0</b>
보전지출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여유자금 예치	750,037	1,162,543	412,506	55.0
<b>행정운영경비</b>	<b>3,000</b>	<b>3,000</b>	<b>-</b>	<b>-</b>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대외협력과 지역상생팀 김근형(☎ 2133-6658)